

진료정보교류사업 안내서

2017.12.



“진료정보교류 사업 지침” 전체본을 (사이트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개정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Contents

I.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3
2. 사업 근거	4
3. 적용 시기	4
4. 주요 서비스 안내	4
II. 진료정보교류 참여 및 이용 안내	7
1. 의료기관 참여 절차	9
2. 국민(환자) 이용 절차	10
III. 진료정보교류 관련 FAQ(의료기관용)	11
1. 의료기관 참여	13
2. 교류 대상 범위	14
3. 지원발생 및 지원책	15
4. 영상정보교류	16
5.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연계	18
6. 시스템 관련	19
[붙임]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EMR 업체 목록	22
IV. 진료정보교류 관련 FAQ(국민용)	23
[참고] 서식	29
의료기관용	
- [서식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 신청서	31
- [서식2] 교류객체번호 등록신청서	33
국민(환자)용	
- [서식3]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4
- [서식4]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전체 철회서	35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



I.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

진료정보교류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 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

※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참여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임



1

사업 목적

1 국민(환자)

- 신속하고 빠른 진료대응으로 환자 위험도 감소
- 중복 진료 최소화로 의료비 절감
-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

2 의료기관

- 환자 진료이력을 이용하여 진료 연속성 강화
- 지역 내 진료교류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진료지원과 협진 네트워크 강화
- 연속성 있는 처방·검사결과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2 사업 근거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6-233호, 2017년 1월 1일)

3 적용 시기

- 2017년 6월 21일부터

4 주요 서비스 안내

1 진료정보교류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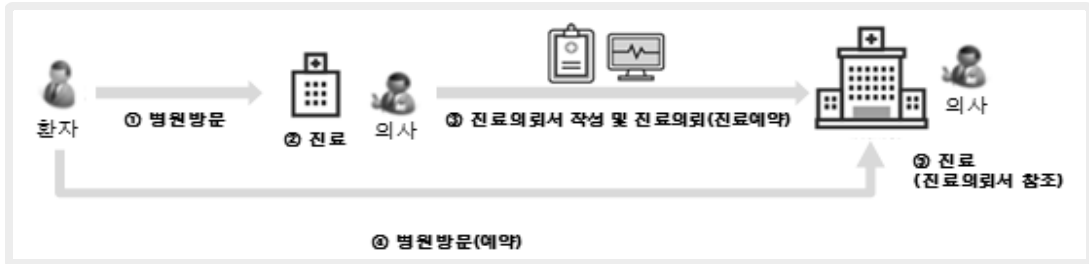
〈 진료정보교류 주요 서비스 절차 및 생성 교류서식 〉



구분	서비스	발생 시점	요청자	주체	매체	교류서식
③-1	진료 의뢰	진료 도중, 완료 후	의사, 환자	의사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전자의료기록시스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진료의뢰서, 영상의학판독 소견서(선택), 진료기록요약지
③-2	진료 회송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경우		의사		진료회송서, 영상의학판독 소견서(선택), 진료기록요약지
③-3	진료 기록 요약	외래환자 진료완료 시, 입원환자 퇴원 시	-	의료인		진료기록요약지

1-1. 진료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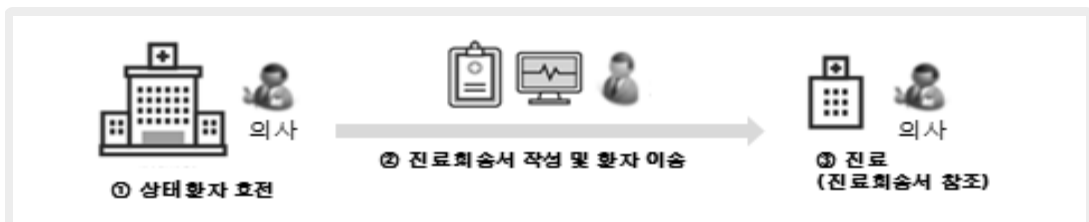
-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
- 서비스 흐름도



- ①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 요청
※ 진료접수 시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최초 1회)
- ② 진료 도중 또는 완료 후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결정
- ③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이용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의뢰서 작성 및 송부
※ 필요 시 CT·MRI 영상정보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함께 송부
- ④ 환자가 진료의뢰 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 요청
- ⑤ 의사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진료의뢰서의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환자 진료

1-2. 진료 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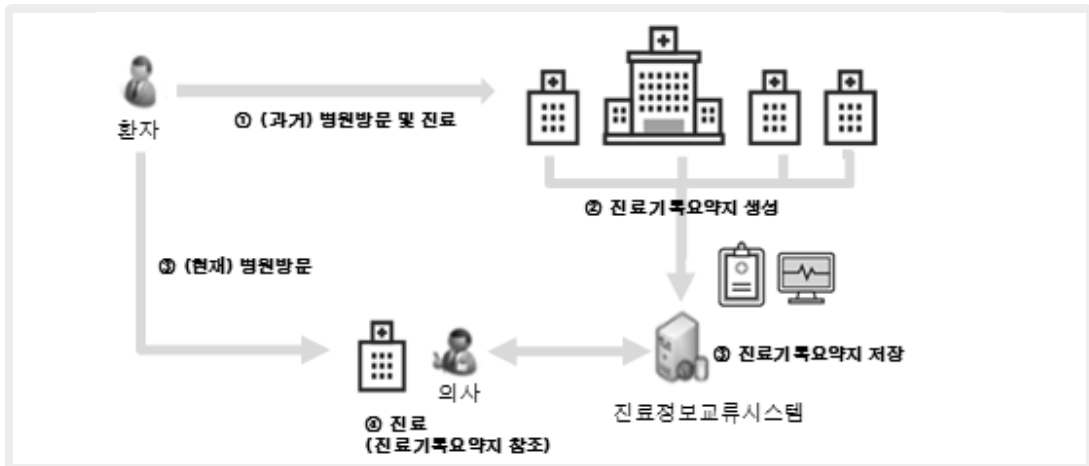
-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
- 서비스 흐름도



- ① 응급 및 중증 환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입원 등을 위한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 이송 결정
-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이용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회송서를 작성하고 진료 회송 및 환자 이송
※ 필요 시 CT·MRI 영상정보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함께 송부
- ③ 의사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진료회송서의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환자 진료

1-3. 진료 기록 요약 생성·참조

-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조회·참조함으로써 진료이력, 병력, 처방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서비스 흐름도



- ① (과거)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참여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 요청
- ② 의사는 외래진료 완료되거나 입원환자가 퇴원 시 **진료요약(진료기록요약지)** 생성
※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점부터 생성 가능
- ③ ①, ②의 반복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요약지가 진료정보시스템에 저장(축적)
- ④ (현재)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참여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 요청
- ⑤ 의사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축적된 해당 환자 **진료요약(진료기록요약지의 진료 기록, 검사기록 등)**을 참조하여 환자 진료



진료정보교류 참여 및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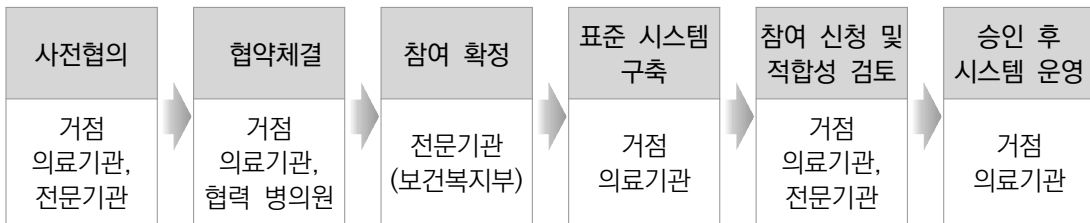
II. 진료정보교류 참여 및 이용 안내

1 의료기관 참여 절차

1 거점 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체계, 시스템 환경, 정보보안, 협력 병의원 협약 등과 관련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참여 신청 및 승인**

※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은 참여희망 의료기관 예산으로 추진(단, 공모 선정 시 정부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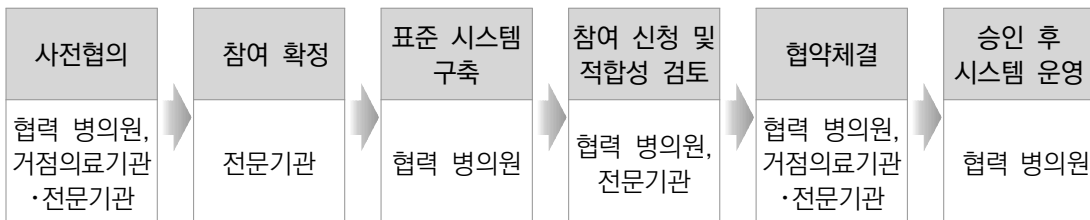


* 전문기관 연락처 : 사회보장정보원 진료교류사업 추진단(02-6360-6911)

2 협력 병의원

협력 병의원은 해당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후 표준 시스템 구축, 전문 기관에 참여 신청·검토 및 거점 의료기관과 협약체결 후 운영

※ 해당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없을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거점기관 연락처 : 연세의료원(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거점(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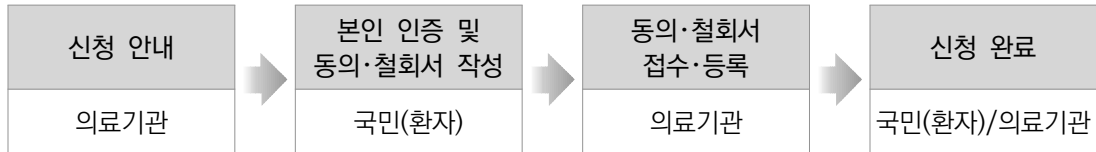
2 국민(환자) 이용 절차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 본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분·전체) 철회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 방법은 내원한 **의료기관 제출, 온라인, 전문기관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

* 신청양식 :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분·전체)철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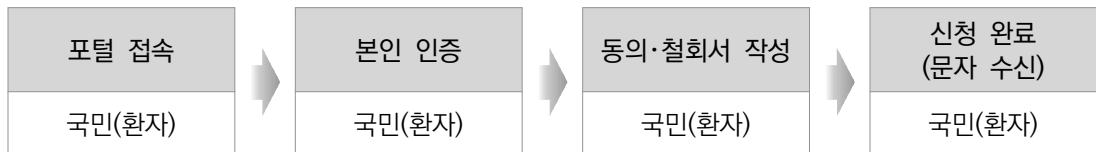
1 의료기관 방문 신청

- 진료정보교류 참여 병의원 방문, 접수처에서 서면, 사인패드, 모바일로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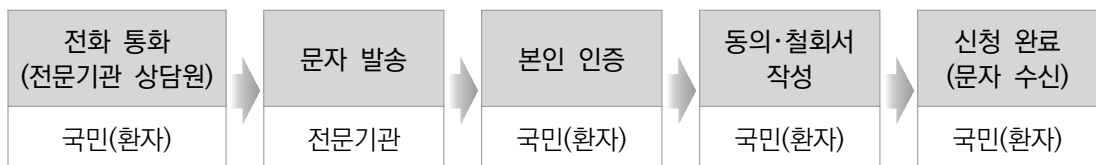
2 온라인 신청

-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3 전문기관 상담센터 신청

- 진료정보교류 전문기관 상담센터 상담원과 통화 후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진료정보교류 관련 FAQ

(의료기관용)



III. 진료정보교류 관련 FAQ(의료기관용)

1 의료기관 참여

Q1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 의무사항은 아님

- 의료법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전송 또는 송부로 규정.
- 다만,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Q2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17년 기준)으로 기준에 부합한 사업 운영 체계, 시스템 환경, 정보보안, 협력 병의원 협약 등의 사전준비를 전문기관(사회보장정보원, 02-6360-6911)과 협의 후 신청

☞ (협력병의원) 전문기관(사회보장정보원, 02-6360-6911), 해당 지역의 거점 의료 기관과 사전협의를, 표준시스템 구축 후 참여 신청

※ 거점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전문기관에 참여 신청 협의

〈거점의료기관 현황('17년 12월 기준)〉

거점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거점 의료기관	연세의료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백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 다만, 활성화를 위해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정부 예산 지원

※ '17년 2개 거점의료기관(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을 선정 및 '18년에도 추가 선정 예정임

Q3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시 협약은 누구와 해야 하나?

- ☞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참여 병의원간 협약이 이루어져야 함. 협약 관련 사항은 해당 거점 의료기관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02-6360-6911)로 문의하면 됨

Q4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 '17.12월까지 1,3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산을 추진 중임

Q5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

- ☞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포털오픈은 '17.12월 예정임

2

교류 대상 범위

Q6

다른 지역에 있는 병의원과도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가?

-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모든 의료기관과 진료정보교류가 가능

Q7

다른 지역에 분원이 있는 거점병원의 경우에 본원과 분원 간의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가?

- ☞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 협력병원으로 등록하여 참여

Q8 **의료기관 간만 교류되는가, 의료기관 아닌 곳과도 교류 가능한가?**

-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간에만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과는 교류가 불가능함

Q9 **진료정보교류 시 모든 진료정보가 교류되나?**

- ☞ 환자가 동의한 시점부터 진료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며,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내용에 대하여만 교류

Q10 **병의원에서 환자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 환자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원본을 분기에 한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발송(착불)하여야 함
- ※ 사회보장정보원 주소 :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진료정보교류사업추진단(02-6360-6911)

3 **비용발생 및 지원책**

Q11 **협력병원의원의 경우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 ☞ 협력 병의원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탑재된 EMR을 사용하여야 함, 이를 위해 협력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EMR 수정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EMR업체에 문의해야 함
- ※ EMR업체 명단은 붙임 참조

Q12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가?

- ☞ 시스템 개편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나, 시스템 표준 모듈 및 기술지원 등은 전문기관에서 지원

Q13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수가를 지급
 - ※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간 연계는 '18.1.1부터 가능
 - ※ 수가 지원 금액('17.12월~) : 의뢰행위(13,000원)
회송행위(외래43,000원, 입원 57,000원)

Q14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교육이 있나?

- ☞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협력 병의원에 사업안내 및 보안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신규로 진료정보교류가 탑재된 EMR 설치 시 사용법 및 보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음

4 영상정보교류

Q15 모든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MRI 영상정보는 진료정보 교류 가능한가 ?

- ☞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간에만 영상정보 교류가 가능함

Q16 CT·MRI가 아닌 다른 영상도 교류가 가능한지?

- ☞ '17년도에는 CT·MRI 위주 영상정보교류를 추진하고 '18년부터는 전체 다이콤(DICOM) 파일에 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확산 준비 중임

Q17 진료정보교류하게 되면, CT·MRI 등을 재촬영 할 수 없는가?

- ☞ 교류된 영상정보는 의료인이 확인하여 필요시 재촬영 할 수 있음

Q18 진료정보교류시스템으로 교류하는 영상정보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환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

Q19 CT·MRI 영상정보를 보기위한 PAC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어떻게 영상정보 확인이 가능한가 ?

- ☞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인 경우 무료 제공되는 웹뷰어를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

Q20 영상정보연계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 ☞ 영상정보연계모듈을 설치할 PC 또는 서버 필요하며, 기존 사용 중인 PC 또는 서버 활용하여 설치 가능. 단, 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 신규 PC, 서버 검토 필요

〈 권장 사양 〉

구분	제원
OS	PC(윈도우 7 이상), 서버(윈도우 서버 2008)
하드디스크	250GBytes 이상
CPU	i7-4세대(하스웰) 2.8GHz 출력 이상
메모리	16GBytes

Q21 영상정보교류를 위한 서버, 라이선스 등 지원은?

- ☞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익스프레스 버전(무상)이 설치되며, 별도의 서버나 라이선스를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준비해야함

5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연계**Q22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병의원은 자동으로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되는 것인지?**

-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심평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야함. 신청은 상급종합병원이 할 수 있으며 협력 병의원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함.

Q23 진료정보교류와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진료의뢰·회송 시 두 가지 교류서식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 ☞ '17.12월말까지는 두 가지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18.1월부터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에서 수가 청구 증빙자료(의뢰·회송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송될 예정으로 수가 청구 시 별도 의뢰·회송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Q24

진료정보교류와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진료 의뢰·회송 시 환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두 번 받아야 하는지?

- ☞ 두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모두 받아야 함. 단,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최초 한 번의 동의로 철회 시까지 유효하며, 심평원 시범 사업은 의뢰·회송 시 마다 동의를 받아야 함

Q25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수가청구가 가능한가?

- ☞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의 협력병원으로 등록·신청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의뢰·회송한 건에 대해 수가 청구가 가능함
(참고) 수가 청구를 위한 필수조건
- ① 시범사업 신청 상급종합병원 또는 그 협력 병원 간의 교류일 경우
 - ②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가입자
 - ③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개인정보동의(매진)
 - ④ 해당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동의

6

시스템 관련

Q26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모듈(API)은 제공되어지는가?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표준연계모듈 및 기술지원을 전문기관(사회보장정보원, 02-6360-6911)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 ☞ '17년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은 기 배포 되었으며, 시스템 고도화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18.2월 중 배포 예정임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첨부파일) 에서 확인 가능

Q27

진료정보교류사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 ☞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시와 연계 가이드라인 확인이 가능함
- ※ 관련 법령(의료법·의료법시행령·의료법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

Q28

[서식1]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정보’작성을 위한 사업 참여 업체별 제품명칭과 개발환경에 대해 확인 가능한가?

- ☞ 사업에 참여하는 22개의 업체의 EMR 제품명칭 및 개발환경은 『붙임1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EMR 업체 명단』에서 확인가능하며, 향후 업체의 증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Q29

영상정보뷰어 이용 시 화면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 ☞ 영상정보뷰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에서 지원 됨.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버전 11이상에서 지원가능하며 그 외 브라우저는 버전 무관하게 사용가능 함. 자세한 안내는 사업단 콜센터(1588-6263)으로 문의하면 됨

Q30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 시 진료의뢰 또는 회송된 진료정보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 ☞ 환자가 이전 병의원에서 진료정보를 발송했는지 확인필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02-6360-6911)로 문의하여 처리 가능

Q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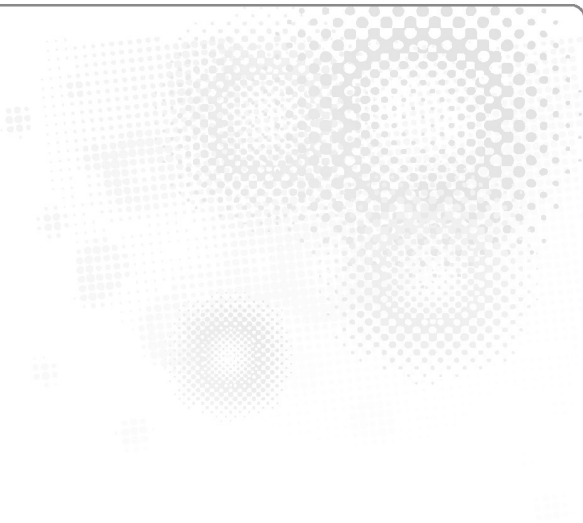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오류 및 장애시 어디로 문의 하나요?

- ☞ 거점의료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02-6360-6911)로 문의, 협력병의원은 사업단 콜센터(1588-6263)으로 문의하여야 함

붙임.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EMR 업체 목록

('17.12월말 현재)

연번	업체명	제품명	개발환경
1	유비케어	의사랑 협진	C#
2	(주)이지케어텍	BEST Care 1.0, 2.0	Delphi, VB, C#
3	다대소프트	K차트	VB6, MSSQL
4	다숨정보	차트매니저	Delphi
5	대일전산	메디세스	VB
6	메트로소프트	메트로HIS	VB6, C#
7	병원과컴퓨터	차트프로2000	VB6
8	브레인컨설팅	닥터브레인	VB
9	서전엠아이티	Clinic 2000(클리닉 2000)	Delphi
10	엔지테크	메디플러스	파워빌더, C#
11	원원MITS	통합의료정보시스템	C#, 오라클
12	유진정보	Full COS	파워빌더
13	이온엠솔루션	E-CHART	C#
14	전능아이티	아담스NC	VB6,Sybase
15	(주)네오소프트뱅크	이플러스 메디차트	VB6
16	(주)비트컴퓨터	비트U차트, bitnixHIB7.0	Delphi, C#
17	(주)엠오디 시스템	MODEMR	파워빌더
18	(주)자인컴	진료정보교류	C#(.NET Framework 4.0)
19	(주)포닥터	매직차트	Delphi
20	클릭소프트	New Click(뉴 클릭)	VB, C#
21	텐소프트	아이차트	Delphi
22	포인트닉스	포인트닉스	VB, C#



IV

진료정보교류 관련 FAQ

(국민용)



IV. 진료정보교류 관련 FAQ(국민용)

1 진료정보교류란?

Q1 진료정보교류란 무엇인가요?

- ☞ 병원과 병원 간 CT·MRI, 진단·처방 등 진료기록을 교류해 주는 서비스임. 병원과 병원 간에 진료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병원은 환자의 병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파악할 수 있어 오진의 위험성이 줄고 정밀한 진료가 가능해짐.

Q2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시 좋은 점은?

- ☞ 병원에서 진료 시 이전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별도의 진료기록사본 서류 없이도 진료 의뢰·회송이 가능

2 진료정보교류 참여

Q3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Q4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중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 진료정보교류는 환자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진료과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부분철회 및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전체철회가 가능함

3 교류 가능 기관

Q5 의료기관 간만 교류되는가, 의료기관 아닌 곳과도 교류 가능한가요?

-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간에만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과는 교류가 불가능함

Q6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할 수 있는가?

- ☞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하고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가능
- ※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 확인 가능

Q7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 ☞ '17.12월까지 1,3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산을 추진 중임

Q8 다른 지역에 있는 병의원과도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가?

-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모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가능

Q9 다른 지역에 분원이 있는 거점 의료기관인 경우에 본원과 분원 간의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가?

- ☞ 분원, 본원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한 의료기관 간에는 모두 진료정보교류가 가능

4 진료 정보의 범위

Q10 진료정보교류 시 모든 진료정보가 교류되나?

- ☞ 진단, 투약, 검사 등 진료기록 및 CT·MRI 영상정보 교류 가능하며,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만 교류 가능

Q11 예전에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도 교류 되나요?

- ☞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동의한 이후부터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함

5 영상정보교류

Q12 모든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MRI 영상정보는 진료정보 교류 가능한가 ?

- ☞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간에만 영상정보 교류가 가능함

Q13 CT·MRI가 아닌 다른 영상도 교류가 가능한지?

- ☞ '17년도에는 CT·MRI 위주 영상정보교류를 추진하고 '18년부터는 전체 다이콤(DICOM) 파일에 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확산 준비 중임

Q14 진료정보교류하게 되면 병원을 옮겨도 CT·MRI 재촬영할 필요가 없나요?

-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간에만 영상정보가 교류되며, 교류된 영상정보는 의료인이 확인하여 필요시 재촬영 할 수 있음

6

기타

Q15 진료정보교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Q16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교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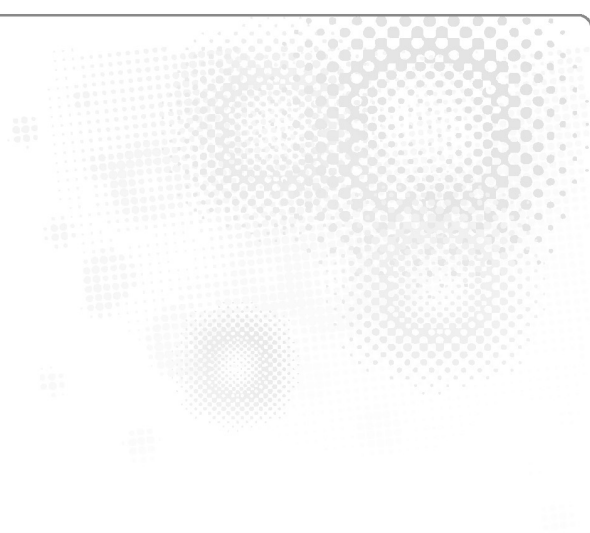
☞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에서 진료의뢰·회송된 의료기관, 날짜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Q17 진료정보교류포털 이용 중 장애발생 시 어디로 문의하나요?

☞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02-6360-6119)로 문의가능

Q18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는가?

☞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02-6360-6119)로 문의가능



참고

서 식

의료기관용

- [서식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 신청서
- [서식2] 교류객체번호 등록신청서

국민(환자)용

- [서식3]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4]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전체 철회서
- 
- 

[서식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 신청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이용 []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 번호
	개설자 성명(법인명)				
	소재지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팩스
연계방식	구축비용	[] 자부담 [] 비용지원신청(자부담: %)			
	참여방식	[] 거점의료기관		참여 협력 의료기관 :	개소 포함
		[] 협력의료기관		[] 거점의료기관 :	병원(거점)
전자의무 기록시스템 (EMR) 정보	도입방식	[] 자체개발(응역포함)		[] 솔루션제품도입	
	관리방법	[] 자체 관리		[] EMR업체 위탁 관리	
	업체명				
	제품명칭				
	개발환경	[] Java [] Delphi [] VB [] C# [] 기타()			
	진료정보교류연 계모듈(API)적용 방식	[] 진료정보교류 연계 모듈 기 적용 [] EMR 내부에 API 적용 방식 [] EMR 외부에 API를 설치한 후 EMR에서 호출하는 방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서 보유 여부	[] 인증서 보유 [] 인증서 미보유			

「의료법」 제21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개설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전문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1부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설명서 1부 3. 법 제23조의2에 따른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시행령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인증서
-------------	--

작성 및 주의사항

- 신청서상의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점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4항에 따라 진료기록의 요약정보 등을 관리하는 의료기관(24시간 운영)을 의미하고 협력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을 제외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의 요약정보 등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거점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공공거점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4항에 의한 진료기록의 요약정보 등의 자료를 거점의료기관이 아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거점의료기관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신청 전에 신청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로 한 협력의료기관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외부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협력의료기관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거점기관의 기관과 전자의무기록외부보관에 관한 협약을 신청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 승인 이후 전자의무기록의 제품이 변경되거나,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협 력 의 료 기 관 제 13조 5제 4항에 따라 협력하는 의료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전문기관)
□ 신청 전 완료 사항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에 관한 협약 체결	↔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에 관한 협약 체결	
□ 신청 처리 절차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검 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송 준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적합여부 통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자료 전송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전송 승인

[서식2]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서

진료정보교류 교류객체등록번호(☐등록 ☐폐기)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주 소 :	

신청기관 정보	요양기관등록코드 :	
	의료기관 유형 ☐ 의원급 ☐ 병원급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 및 의사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유형 ☐ 자체개발 ☐ 솔루션구매 (제품명:)	청구소프트웨어 유형 ☐ 자체개발 ☐ 솔루션구매 (제품명:)

본 기관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이용을 위해 상기와 같이 진료정보
교류용 교류객체등록번호의 등록·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3]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 등 진료정보를 타 의료기관 내원 진료 시 활용(이하 “진료정보교류서비스”라 한다)하고,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평가 및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동의서 보관방법: 서면으로 제출한 본 동의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진료정보교류시스템(보건복지부)에서 보관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동의주체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공하는 정보항목	[1]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민감정보 (진료정보)	① 수진일별 처방내용(약 처방, 검사내역) ② 진단내용 ③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에 관한 내용(수술일, 수술명 등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되는 일체의 수술정보) ④ 외래접수 정보(진료과, 진료를, 주치의) ⑤ 입퇴원정보(입원일, 퇴원일 등 일체의 입퇴원 정보) ⑥ 예약정보(일시, 내용 등 일체의 예약정보) ⑦ 예방접종 내역 ⑧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⑨ 생체신호 정보 및 흡연, 음주상태 ⑩ 신고된 법정 전염성 감염병 정보 ⑪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제공·이용의 목적	①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경제적·의학적 편익분석을 위하여 행해지는 진료정보교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분석						
제공받는 자	① 본인이 내원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기관 (다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한정) ② 보건복지부 (통의서관리,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평가자료로 한정)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전체) 철회서” 제출 전까지입니다. ② 본인(법정대리인)이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즉시 삭제 및 처리를 정지합니다. ③ 다만 위 제①,②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보가 보유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또는 제한사항	①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진료접수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의 무기특송부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제외사항	진료과	☐ 비뇨기와 ☐ 산부인과 ☐ 정신의학과 ☐ 기타 ()					
본인(법정대리인)은 [1]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본인(법정대리인)은 [2]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본인(법정대리인)은 [3]민감(진료)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20 년 월 일							
환자(대리인 또는 보호자) 이름 :						(인)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서식4]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전체 철회서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부분 □전체) 철회서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10일 이내
동의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 소			
철회내용	[] 부 분 의 료 기 관	의료기관명 (동의 철회 요구)	※ 동의를 철회하는 의료기관명을 나열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부 분 진 료 과	진료과명 (동의 철회 요구)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정신의학과 □ 기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전 체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환자(대리인 또는 보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작 성 방 법				
1. '법정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부분 의료기관'란에 [√] 표시를 하고, 의료기관명에 철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명칭을 나열하여야 합니다. [√] 를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명을 나열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부분 진료과'란에 [√] 표시를 하고, 진료과명에 철회하고자 하는 진료과명을 나열하여야 합니다. [√] 를 하지 않거나 진료과명을 나열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4. 진료교류정보 전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